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안은 2023. 5. 30.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. 6. 1.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¹⁾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29억 9천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6백만원에서 35억 4천만원으로 5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였고, '기타수입'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.

- 예치금 회수 :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*를 통한 예치금 감액(△200백만원),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06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38백만원)
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
○ 또한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'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및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'비용자성사업비' 8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음.

- 비용자성 사업비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(41백만원),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비 감액(△130백만원)

○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(예치금)' 금액이 당초 10억 8천 3백만원에서 17억 2천 2백만원으로 6억 3천 9백만원 증가하여 59.0% 변경되었음.

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〉

〈수입계획〉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3차 변경 (D)	총 감 (D-A)	구 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3차 변경 (D)	총 감 (D-A)
계	4,056	4,056	4,056	4,606	550	계	4,056	4,056	4,056	4,606	550
일반회계 전입금	1,000	1,000	1,000	1,000	-	비용자성 사업비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
이자수입	60	60	60	60	-	기본경비	3	3	3	3	-
기타수입	0	0	0	6	6	예치금	1,083	1,083	1,042	1,722	639
예치금회수	2,996	2,996	2,996	3,540	544						

※ 1차 변경('23.2.16.) : '동해·울진 산불지 복구지원' 사업 예산과목 변경

※ 2차 변경('23.4.4.)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 신규 편성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

4. 검토 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5억 5천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5억 4천 4백만원) 및 기타수입(6백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비융자성사업비(△8천 9백만원) 및 예치금(6억 3천 9백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〈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〉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970	2,881	△89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(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)	2,970	2,881	△89
재무활동(행정국 대외협력과)	1,083	1,722	639
보전지출(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)	1,083	1,722	639

※ 자료근거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지출계획,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('23.5.30.) 재구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‘재무활동(예치금)’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59.0%, 6억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비용자성사업비 중 “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” 사업을 기존 대행사 선정방식에서 사업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81.3% 감액된 바, 사업추진 구조를 효율화하여 투입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< “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” 사업예산 : 3천만원 >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	세부내역
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	사무관리비	25,000	-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: 5,000천원 · 장소대관, 현수막 제작, 비품구입 등 - 지역상생사업 홍보비 : 20,000천원
		행사운영비	5,000	- 강 사 료 : 4,000천원 · 강사료 1회당 20만원 * 20회 = 4,000천원 - 기타 부대비용 : 1,000천원

- 또한,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,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예치금 관리현황 (2023. 5. 31. 기준)

○ 시금고 예치 현황

(단위 : 천원)

총 액	시금고 예치금	
	공공예금	정기예금, MMDA
4,178,744	778,744	3,400,000

○ 세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계정과목	금 액	기 간	이 율
공공예금	778,744	-	2.02
정기예금	1,000,000	12개월	4.92
	900,000	4개월	4.40
	500,000	6개월	4.64
MMDA	1,000,000	수시입출금	3.46
합 계	4,178,744		

전문위원	김 정 덕	입법조사관	이 태 기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